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. 3. 28 선고 2023가단123686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현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11. 9.

판 결 선 고 2024. 3. 28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-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23. 6. 1.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망 C(2023. 5. 21. 사망)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주택’이라 한다)의 소유자였는데, 망 C 사망 후 망 C의 딸인 원고가 2023. 6. 12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는 망 C과 동거하던 사람으로 2007. 4. 30.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23. 6. 1.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50만 원씩의 지급을 구하나,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월 50만 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다. 피고는 2023. 5. 17. 망 C과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였고 망 C이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로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사실혼 관계 파기 및 이 사건 주택 양도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여현주

별지